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고액·상습채납 방지 및 채납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채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 2005.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며,
-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조정 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지방세의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의 4).

- 나.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비율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안 제21조, 부칙 제2항).
- 다. 주택분 재산세 현행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조정함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III. 검토의견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2005. 12.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가 신설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개선 및 소액 재산세 일시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006. 2. 7일 자치구 세조례정비(안)이 통보되어 이에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각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의4)

○ 먼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신설된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서는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칙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성 인원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한 것이며, 참고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20 현재 2년

이 경과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채납자는 삼우텍스프라자와 5명이 되겠습니다.

3.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감소 여부 (안 제21조의2)

○ 안 제21조의2 제1항제3호 나목에서 현행 표준세율 보다 15%의 재산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주택분 재산세율을 15% 정도 탄력세율 적용한다면 그 효과는 주로 중상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세수감소는 현행 재산세액 103억원 대비 19억원이 감소된 84억원이 되겠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액만큼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표에 따라 구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세수확충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4. 28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 현황을 보면, 중랑구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가 10%~40%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구민에게 과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바, 타 자치구의 감면율, 조세의 형평성, 구민의 혜택 등을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적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 수정의견

○ 모든 법령(조례)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부터 시행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용시점이나 적용대상 또는 신·구법(조례)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이 조례(안) 부칙을 보면, 2항의 규정에서 ②(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4항의 규정에서는 ④(유효기간 경과후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중으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2개항으로 중복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결 · 명확하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와 같이 ②(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②(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적용시한)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유효기간 경과후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I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5. 12. 31 법률 제 7843호]

제69조의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이하 "채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서울>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서울>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5.12.31>

-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52조의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재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1]

<표 1>

자치구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2006. 4. 28 현재

구 별	'04년 (%)	'05년 (%)	'06년 (%)	비 고
계	20	15	20	
총 로	△15	-	△15	<2006년 탄력세율>
총	△30	△40	△40	
용 산	△20	△20	△20	○탄력세율 미적용 (5) - 종량 - 도봉 - 은평 - 서대문 - 금천
성 동	△20	△10	△10	
광 진	△10	△10	△10	
동 대 문	△20	-	△20	
종 량	-	△20	-	
성 북	△20	△20	△20	○탄력세율 10% (2) - 성동 - 광진
강 북	-	△20	△20	
도 봉	-	-	-	○탄력세율 15% (1) - 종로
노 원	△20	-	△20	
은 평	-	-	-	○탄력세율 20% (10) - 용산 - 동대문 - 마포 - 관악 - 강서 - 구로 - 영등포 - 동작 - 강북 - 성북
서 대 문	△10	-	-	
마 포	△20	△20	△20	
양 천	△20	△30	△30	
강 서	△20	△20	△20	
구 로	△20	△20	△20	
금 천	-	-	-	
영 등 포	△25	△20	△20	
동 작	△20	△20	△20	○탄력세율 25% (1) - 강동
관 악	△20	△20	△20	
서 초	△20	△30	△30	○탄력세율 30% (5) - 양천 - 서초 - 송파 - 강동 - 강남
강 남	△30	-	△30	
송 파	△25	-	△30	
강 동	△20	-	△25	○탄력세율 40% (1) - 중구

<표 2>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구 세)

(단위 : 천원) 2006. 4. 20 현재

연 번	체납자 성명	체납세액	비 고
1	삼우텍스프라자	237,383	
2	주-서린관광호텔	118,826	
3	바이뉴테크먼트	219,531	
4	정도공영	311,211	
5	천보건설	142,119	
6	장 영 자	167,697	